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일하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17년 9월 29일

나. 회부일자 : 2017년 9월 29일

3.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사항 반영
(안 제2조)

나. 도로점용료 분할 부과·징수 시 남은 금액 이자 산출 관련
「국유재산법 시행령」 조항 변경 사항 반영 (안 제3조제2항)

다. 2개 연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될 때 연간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로 정액 제한하여 주민부담 완화
(안 제4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르고,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개정에도 맞도록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점용료를 조정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기준을 정한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 제2조는 이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정함.
- 안 제3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도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에 따라 110%~130%까지 차등 부과된 점용료를 110%로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17. 8. 16.~'17. 9. 5.)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로점용료의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